

※ [주의] 고객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GIC) 핵심(요약)설명서

[핵심(요약)설명서]

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특징	수익률 형태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GIC)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부담금 납입 시점에 확정된 이율을 보증기간 동안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	약정금리형
시중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부담금 납입 시점에 확정된 이율을 약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	약정금리형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발생 가능한 불이익

- DB 제도에 편입하는 경우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 제도에 편입하는 경우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만기 이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되오니 가입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재예치일)에 고시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낮은위험)

-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투자 원금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위험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 유의사항

- DB 제도: 만기일에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원금에 만기지급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약정 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됩니다.
- DC/IRP 제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한 가입자의 경우 상환 자금은 운용 대기기간 만료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대로 운용이 개시되며, 대기기간 동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민원, 상담 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퇴직연금 고객센터(1588-8844),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 > 고객센터/FAQ > 고객의 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 (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GIC) 상품설명서

상품명	한화생명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GIC)																					
상품특징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부담금 납입 시점에 확정된 적용 이율을 보증기간 동안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																					
약정기간	1/2/3/5 년																					
가입금액	1 원 이상 원단위																					
중도해지 및 인출	만기 전 전부 또는 일부 중도 해지 가능 단, 만기 전 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은 적용이율의 80%																					
만기처리방법	- DB 제도 : 만기일에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원금에 만기지급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약정 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 DC/IRP 제도 :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한 가입자의 경우 상환 자금은 운용 대기기간 만료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대로 운용이 개시되며, 대기기간 동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예금자보호여부	- DB 제도에 편입하는 경우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 제도에 편입하는 경우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1 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적용금리	본 상품은 상품 매수결제일에 '당사 홈페이지 > 연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알아보기 > 퇴직연금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 에 공시된 해당상품의 금리를 적용. 단, 만기 전 중도해지 및 인출 시에는 아래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일부터 중도해지 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 - 일반중도해지 시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X 80% - 특별중도해지 시 : 다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DB/DC</th> <th style="width: 50%;">IRP</th> </tr> </thead> <tbody> <tr> <td>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사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td> <td>1.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td> </tr> <tr> <td>2. 약관 제 17 조(중도해지) 제 2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td> <td>2.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td> </tr> <tr> <td>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td> <td>3.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td> </tr> <tr> <td>4. 가입자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td> <td>4.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td> </tr> <tr> <td>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td> <td>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td> </tr> <tr> <td>6.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td> <td>5.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td> </tr> <tr> <td>7. 법 제 16 조 제 4 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td> <td>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시행령 제 13 조의 6 에 따라</td> </tr> <tr> <td>8.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td> <td>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td> </tr> <tr> <td>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td> <td>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DB/DC	IRP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사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1.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2. 약관 제 17 조(중도해지) 제 2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4. 가입자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5.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7. 법 제 16 조 제 4 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시행령 제 13 조의 6 에 따라	8.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DB/DC	IRP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사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1.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2. 약관 제 17 조(중도해지) 제 2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4. 가입자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5.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7. 법 제 16 조 제 4 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시행령 제 13 조의 6 에 따라																					
8.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p>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p> <p>9.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시행령 제 13 조의 6 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p> <p>10. 법 제 22 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p> <p>* 1~5 번 항목은 DB/DC 공통, 6~7 번 항목은 DB 에 해당 8~10 번 항목은 DC 에 해당</p>	<p>6. 법 제 24 조 제 5 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p> <p>7.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p> <p>8. 약관 제 16 조(중도해지) 제 2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 7,8 번 항목은 기업형 IRP 에 해당</p>
--	---	--

※ 아래 내용은 고객님의께서 교부 받으신 설명서에 추가되는 내용이오니 설명을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p>행사요건</p>	<p>고객님께서 회사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대상 금융상품</p>	<p>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p>
<p>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p>	<p>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p>
<p>해지절차</p>	<p>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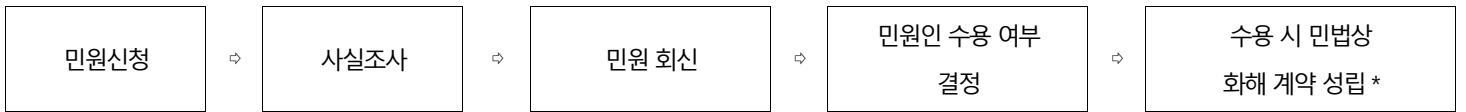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p>행사요건</p>	<p>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자료열람</p>	<p>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접,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p> <p>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p>

▣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

대상상품	1. 투자성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단위형),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2. 대출성상품: 신용공여(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청약철회 행사방법	[투자성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숙려기간 2일 포함 시 9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께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계약/청약한 금액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성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경우 고객은 대출원금과 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지대(인지세의 50%)등을 반환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반대매매 등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내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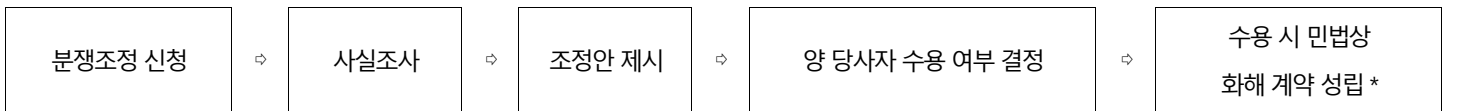
▣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영업점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 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 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연락처	바로 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 판매직원 확인 사항

판매직원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한국투자증권 _____ 지점 (☎ _____) 직위: _____ 직원명 : _____ (서명)